용도지역별 건축기준 조견표

(령 제71조. 별표2~별표23 요약)

2024. 1. 31. 기준

시설군	용도	용도지역 및 건축물 세부종류	도시지역																관리지역[1]			농림지역	자연환경보전지역	자연취락지구
			주거지역						상업지역				공업지역			녹지지역[1]								
			전용		일반			준	중심	일반	근린	유통	전용	일반	준	보전	생산	자연	보전	생산	계획			
			1종	2종	1종	2종	3종																	
	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	별표2	별표3	별표4[1][3]	별표5[2]	별표6	별표7	별표8	별표9	별표10	별표11	별표12	별표13	별표14	별표15	별표16	별표17	별표18	별표19	별표20[4]	별표21[5]	별표22[6]	별표23[1]
		도시·군계획조례에 따른 건폐율																						
		용도별 건축물의 종류(건축법 시행령 별표1) 용적률																						
1 자동차	자동차 관련시설(1)	㉮주차장	○	○	○	○	○	◇	●	●	●	●	●	●	●	×	×	○	×	×	◇	×	×	○
		㉯세차장	×	×	○	○	○	◇	◇	●	●	●	●	●	●	×	×	○	×	×	◇	×	×	○
		㉰폐차장	×	×	×	×	×	×	×	×	×	◇	●	●	●	×	×	○	×	×	◇	×	×	×
		㉱검사장 ㉲매매장 ㉳정비공장	×	×	×	×	×	◇	◇	◇	×	◇	●	●	●	×	×	○	×	×	◇	×	×	×
		㉴운전학원 및 정비학원(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)	×	×	×	×	×	◇	◇	◇	×	◇	●	●	●	×	○	○	×	○	◇	×	×	×
		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,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	×	×	×	○	○	◇	◇	◇	◇	◇	●	●	●	×	○	○	×	○	◇	×	×	×
		㉶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	×	×	×	×	×	◇	●	●	●	◇	●	●	●	×	×	○	×	×	◇	×	×	×
2 산업등시설군	운수시설	㉮여객자동차터미널 ㉯철도시설 ㉰공항시설 ㉱항만시설 ㉲그밖에 ㉮~㉱의 시설과 비슷한 것	×	×	×	×	×	◇	●	●	③	●	○	●	●	×	×	○	×	×	◇	×	×	×
	공장	물품의 제조·가공(염색·도장·표백·재봉·건조·인쇄 등을 포함)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[가]	×	×	Ⓐ	Ⓐ	Ⓐ	A	F	A	A	×	●	●	⑤	×	Ⓑ	Ⓒ	×	Ⓓ	B	×	×	Ⓔ
	창고시설(2)	㉮창고(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냉장 및 냉동창고 포함)	×	×	○	○	○	◇	◇	●	◇	●	●	●	●	A	A	A	Ⓕ	A	Ⓐ	A	×	A
		㉯하역장 ㉰물류터미널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것)	×	×	○	○	○	◇	◇	●	◇	●	●	●	●	×	×	×	×	×	◇	×	×	×
		㉱집배송시설	×	×	○	○	○	◇	◇	●	◇	●	●	●	●	×	×	○	×	×	◇	×	×	×
	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3)	㉮주유소(기계식 세차설비포함) 및 석유판매소 ㉯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 ㉰도료류판매소	×	×	○	○	○	◇	◇	◇	◇	◇	●	●	●	×	○	○	○	○	◇	×	×	○
		㉰액화석유가스 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(기계식 세차설비 포함)	×	×	Ⓖ	Ⓖ	Ⓖ	C	C	C	C	C	●	●	●	Ⓗ	B	○	○	○	◇	Ⓗ	×	○
		㉱위험물제조소·저장소·취급소 ㉲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	×	×	×	×	×	◇	◇	◇	◇	◇	●	●	●	×	○	○	○	○	◇	×	×	○
		㉳고압가스 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	×	×	Ⓖ	Ⓖ	Ⓖ	C	C	C	C	C	●	●	●	Ⓗ	B	○	○	○	◇	Ⓗ	Ⓘ	○
		㉴도시가스 제조시설 ㉵화약류 저장소 ㉶그 밖에 ㉮~㉵의 시설과 비슷한것	×	×	×	×	×	◇	◇	◇	◇	◇	●	●	●	×	○	○	○	○	◇	×	×	○
	자원순환관련시설	㉮하수 등 처리시설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●	●	●	Ⓙ	○	●	Ⓙ	○	●	○	Ⓙ	○
		㉯고물상 ㉰폐기물재활용시설 ㉱폐기물 처분시설 ㉲폐기물감량화시설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●	●	●	×	○	●	×	○	●	○	×	○
	묘지관련시설	㉮화장시설 ㉯봉안당(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) ㉰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㉱동물(화장시설·건조장시설·전용납골시설)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○	○	●	○	○	●	○	○	×
	장례시설	㉮장례식장 [의료시설(종합병원, 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)의 부수시설 제외] ㉯동물전용장례식장	×	×	×	×	×	◇	◇	●	●	◇	×	○	●	○	○	●	○	○	●	○	×	×
3 전통	방송통신시설(4)	㉮방송국(프로그램제작 및 송·수신 중계시설 포함) ㉯전신전화국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○	○	●	×	●	●	○	○	●	○	×	●
		㉰촬영소 ㉱통신용시설 ㉲데이터센터 ㉳그밖에 ㉮~㉳의 시설과 비슷한 것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○	○	●	×	●	●	○	○	●	○	×	●
	발전시설	발전소(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)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것	×	×	○	○	○	◇	●	●	◇	◇	●	●	●	×	●	●	○	●	●	●	○	●
4 문화집회시설군	문화 및 집회시설	㉮공연장(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, 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[다]	×	×	×	○	○	●	●	●	●	●	×	×	●	×	×	○	×	×	◇	×	×	○
		㉯집회장(예식장, 공회당, 회의장, 마권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 등 이와 비슷한 것)[다]	×	×	○	○	○	◇	●	●	◇	◇	×	×	◇	×	○	○	×	×	◇	×	×	○
		㉰관람장(경마장,경륜장,경정장,자동차경기장 등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,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1천㎡ 이상인 것)	×	×	×	×	×	◇	●	●	◇	◇	×	×	◇	×	×	○	×	×	◇	×	×	○
		㉱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문화관, 체험관, 기념관, 산업전시장, 박람회장, 그 밖에 비슷한것)	Ⓚ	Ⓚ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●	Ⓜ	○	●	○	○	○	×	×	◇	×	×	○
		㉲동·식물원(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	×	×	○	○	○	◇	●	●	◇	◇	×	×	◇	×	×	○	×	×	◇	○	×	○
	종교시설	㉮종교집회장(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, 수녀원, 제실, 사당 등 이와 비슷한 것)[다]	⑩	⑩	○	●	●	●	●	●	●	◇	×	○	◇	○	○	○	×	×	◇	○	Ⓝ	○
		㉯종교집회장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)에 설치하는 봉안당	⑩	⑩	○	●	●	●	●	●	●	◇	×	○	◇	○	○	○	×	×	◇	○	Ⓝ	○
	위락시설	㉮단란주점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) ㉯유흥주점이나 이와 비슷한 것	×	×	×	×	×	×	ⓐ	ⓐ	G	G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
		㉯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(제2종근생과 운동시설 제외)	×	×	×	×	×	×	ⓐ	ⓐ	G	G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
		㉰삭제 ㉱무도장, 무도학원 ㉲카지노영업소	×	×	×	×	×	×	ⓐ	ⓐ	G	G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
	관광휴게시설	㉮야외음악당 ㉯야외극장 ㉰어린이회관	×	×	×	×	×	◇	◇	●	◇	◇	×	×	◇	×	×	●	×	×	◇	×	×	×
		㉱관망탑 ㉲휴게소 ㉳공원,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	×	×	×	×	×	◇	◇	●	◇	◇	×	×	◇	×	×	●	×	×	◇	×	×	×
5 영업시설군	판매시설(5)	㉮도매시장(농수산물 도매시장·공판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	×	×	×	×	×	◇	●	●	③	●	Ⓟ	Ⓑ	Ⓑ	×	Ⓕ	Ⓠ	×	Ⓕ	◈	×	×	Ⓡ
		㉯소매시장(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)	×	×	Ⓞ	Ⓞ	Ⓞ	◇	●	●	③	●	Ⓟ	Ⓑ	Ⓑ	×	Ⓕ	Ⓠ	×	Ⓕ	◈	×	×	Ⓡ
		㉰상점[일용품 판매 소매점(서점제외)[나]인 것과 청소년·일반·인터넷 컴퓨터·복합유통게임제공업[다]]	×	×	Ⓞ	Ⓞ	Ⓞ	◇	●	●	③	●	Ⓟ	Ⓑ	Ⓑ	×	Ⓕ	Ⓠ	×	Ⓕ	◈	×	×	Ⓡ
	운동시설	㉮탁구·테니스·체력단련·에어로빅·볼링·당구·골프연습장,체육도장,실내낚시터,놀이형시설 등 이와 비슷한 것[나],[다]	×	×	Ⓢ	○	○	●	●	●	●	◇	×	×	◇	×	○	●	×	×	◇	×	×	●
		㉯체육관으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㎡ 미만인 것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×	×	◇	×	○	●	×	×	◇	×	×	●
		㉰운동장(육상·구기·볼링·수영·스케이트·승마·사격·궁도·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)[라]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×	×	◇	×	●	●	×	●	●	×	×	●
	숙박시설	㉮일반숙박시설	×	×	×	×	×	×	ⓐ	ⓐ	ⓐ	G	×	×	◇	×	×	Ⓣ	×	×	◐	×	×	Ⓣ
		㉯생활숙박시설(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)	×	×	×	×	×	H	ⓑ	ⓑ	ⓑ	H	×	×	◇	×	×	Ⓣ	×	×	◐	×	×	Ⓣ
		㉰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, 휴양콘도미니엄 등) ㉱다중생활시설[다],[자] ㉲그 밖에 ㉮~㉱의 시설과 비슷한 것	×	×	×	×	×	×	●	●	●	◇	×	×	◇	×	×	Ⓣ	×	×	◐	×	×	Ⓣ
6 교육복지시설군	의료시설	㉮병원(종합병원,병원,치과병원,한방병원,정신병원 및 요양병원)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×	○	○	●	○	○	Ⓒ	○	○	Ⓒ	○	×	Ⓤ
		㉯격리병원(전염병원, 마약진료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	×	×	×	×	×	×	◇	●	×	×	○	○	●	○	○	●	○	○	●	○	×	×
	교육연구시설(6)	㉮학교(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)	Ⓥ	Ⓥ	Ⓓ	Ⓓ	Ⓓ	●	◇	●	●	◇	×	○	●	Ⓔ	Ⓕ	●	Ⓔ	Ⓔ	●	Ⓒ	Ⓒ	○
		㉯교육원(연수원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)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×	○	●	×	Ⓕ	●	×	Ⓕ	●	×	×	○
		㉰직업훈련소(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)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Ⓦ	○	●	×	○	○	×	×	◇	×	×	○
		㉱학원(자동차·무도학원, 원격교습학원 제외), 교습소(자동차·무도교습소, 원격교습소 제외)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Ⓧ	○	●	×	○	○	×	×	◇	×	×	○
		㉲연구소(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)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Ⓨ	○	●	×	Ⓕ	●	×	×	◇	×	×	○
		㉳도서관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×	○	●	×	×	●	×	×	●	×	×	○
	노유자시설	㉮아동 관련 시설(어린이집,아동복지시설,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[마],[나])	○	○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◇	○	○	●	○	●	●	○	○	●	×	×	○
		㉯노인복지시설[마] ㉰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·근로복지시설	○	○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◇	○	○	●	○	●	●	○	○	●	×	×	○
	수련시설	㉮생활권수련시설 ㉯자연권수련시설 ㉰야영장시설(관광진흥법:관리동 등 바닥면적 합계 300㎡이상인 것)	×	×	○	○	○	●	◇	◇	●	◇	×	○	●	×	●	●	×	○	●	○	×	○
		㉱유스호스텔(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것)	×	×	Ⓩ	Ⓩ	Ⓩ	●	◇	◇	●	◇	×	○	●	×	●	●	×	○	●	○	×	○
	야영장시설	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, 화장실, 샤워실, 대피소,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미만인 것	×	×	○	○	○	●	◇	◇	●	◇	×	○	●	○	●	●	○	○	●	○	×	○
7 근린생활시설군	제1종근린생활시설(7)	㉮식품·잡화·의류·완구·서적·건축자재·의약품·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1천㎡ 미만인 것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⑤	●	●	○	●	●	○	○	●
		㉯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[바],[사]으로서 300㎡ 미만인 것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○	●	●	×	×	◐	×	×	●
		㉰이용원, 미용원, 목욕장, 세탁소[아]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·수선하는 시설	⑩	⑩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⑤	●	●	○	○	●	○	×	●
		㉱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, 조산원, 안마원,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·치료 등을 위한 시설	⑩	⑩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⑤	●	●	○	○	●	○	×	●
		㉲탁구장, 체육도장으로서 500㎡ 미만인 것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⑤	●	●	○	○	●	○	×	●
		㉳지역자치센터,파출소,지구대,소방서,우체국,방송국,보건소,공공도서관,건강보험공단사무소등 주민편의 공공 업무시설로서 1천㎡미만인 것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⑤	●	●	○	○	●	○	○	●
		㉴마을회관·공동작업소·공동구판장, 공중화장실, 대피소, 지역아동센터[마]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	Ⓖ	⑩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⑤	●	●	○	Ⓗ	●	Ⓗ	㉠	●
		㉵변전소, 도시가스배관시설, 통신용시설(1천㎡ 미만), 정수장,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	⑩	⑩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⑤	●	●	○	●	●	●	○	●
		㉶금융업소,사무소,부동산중개사무소,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㎡ 미만인 것	×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○	●	●	○	○	●	○	×	●
		㉷전기자동차 충전소(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㎡ 미만인 것)	×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⑤	●	●	○	○	●	○	×	●
		㉸동물병원,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미만인 것	×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⑤	●	●	○	○	●	○	×	●
	제2종근린생활시설(7)	㉮공연장(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, 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으로서 500㎡ 미만인 것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●	●	●	×	○	●	○	○	●	○	×	●
		㉯종교집회장[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, 수녀원, 제실(祭室), 사당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]로서 500㎡ 미만인 것	○	○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●	●	●	○	○	●	○	○	●	○	Ⓝ	●
		㉰자동차영업소로서 1천㎡ 미만인 것 ㉱서점[나] ㉲총포판매소 ㉳사진관, 표구점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●	●	●	×	⑩	●	○	○	●	○	×	●
		㉴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,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500㎡ 미만인 것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●	●	●	×	○	●	○	○	●	○	×	●
		㉵휴게음식점, 제과점[바] 등으로 300㎡ 이상인 것 ㉶일반음식점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○	●	●	×	⑩	○	×	×	◐	×	×	○
		㉷장의사, 동물병원, 동물미용실, 동물위탁관리업 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[나]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●	●	●	×	⑩	●	○	○	●	○	×	●
		㉸학원(자동차·무도학원, 원격교습학원 제외), 교습소(자동차·무도교습소, 원격교습소 제외), 직업훈련소(운전·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)로서 500㎡ 미만인 것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●	●	●	×	○	●	○	○	●	○	×	●
		㉹독서실, 기원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Ⓘ	●	●	×	⑩	●	○	○	●	○	×	●
		㉺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낚시터, 골프연습장,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(탁구장, 체육도장 제외)로서 500㎡ 미만인 것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●	●	●	×	○	●	○	○	●	○	×	●
		㉻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소, 출판사 등 업무시설로서 500㎡ 미만인 것[나]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●	●	●	×	○	●	○	○	●	○	×	●
		㉼제조업소,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500㎡ 미만인 것[아],[차]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●	●	●	×	○	●	×	Ⓛ	◇	Ⓛ	×	●
		㉽단란주점으로서 150㎡ 미만인 것	×	×	×	×	×	×	●	●	●	◇	×	×	◇	×	×	×	×	×	×	×	×	×
		㉾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	×	×	Ⓔ	Ⓔ	Ⓔ	Ⓓ	●	●	●	◇	○	Ⓙ	Ⓓ	×	⑩	Ⓙ	○	○	Ⓓ	Ⓔ	×	Ⓙ
5		㉿다중생활시설[자]로서 500㎡ 미만인 것[10]	×	×	○	○	○	●	●	●	●	◇	●	●	●	×	○	●	○	○	●	○	×	●
8 주거업무시설군	단독주택(8)	㉮단독주택 ㉯다중주택 [연면적 660㎡이하이고 3층이하인 것(욕실 설치 가능, 취사시설 불가)] ㉰공관	●	●	●	●	●	●	J	◇	●	×	×	○	◇	○	●	●	●	●	●	Ⓓ	Ⓓ	●
		㉱다가구주택(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㎡ 이하, 3개층 이하,19세대 이하)[12]	○	●	●	●	●	●	J	◇	●	×	×	○	◇	×	●	●	●	●	●	Ⓓ	Ⓓ	●
	공동주택(9)	㉮아파트(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이상)[11]	×	●	×	●	●	●	K	Ⓔ	Ⓔ	×	×	×	◇	×	×	×	×	×	×	×	×	×
		㉯연립주택(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㎡ 초과, 4개층 이하)[11],[13]	○	●	●[3]	●	●	●	K	Ⓔ	Ⓔ	×	×	×	◇	×	○	○	×	○	◇	×	×	○
		㉰다세대주택(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㎡ 이하, 4개층 이하)[12],[13]	○	●	●[3]	●	●	●	K	Ⓔ	Ⓔ	×	×	×	◇	×	○	○	×	○	◇	×	×	○
		㉱기숙사(일반형, 임대형으로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수의 50% 이상인 것)[카]	×	●	●	●	●	●	K	Ⓔ	Ⓔ	×	○	○	●	×	○	○	×	○	◇	×	×	○
	업무시설	㉮공공업무시설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[나]	×	×	×	㉤	㉥	●	●	●	●	●	×	×	●	×	×	×	×	×	×	×	×	×
		㉯일반업무시설 : 금융업소, 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소, 출판사, 신문사 등[나],[다] 오피스텔[타]	×	×	㉣	㉤	㉥	●	●	●	●	●	×	Ⓗ	●	×	×	×	×	×	×	×	×	×
	교정시설(4)	㉮교정시설(보호감호소, 구치소 및 교도소) ㉯갱생보호시설 등[파] ㉰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	×	×	○	○	○	◇	◇	◇	◇	◇	○	○	◇	●	●	●	●	●	●	○	×	●
	국방·군사시설(4)	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	×	×	○	○	○	◇	●	●	◇	◇	○	○	◇	●	●	●	●	●	●	○	㉦	●
9 기타	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	㉮축사(양잠,양봉,양어,양돈,양계,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 포함)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○	◇	○	●	●	○	○	●	○	㉧	●
		㉯가축시설(가축용운동시설, 인공수정센터, 관리사, 가축용창고, 가축시장, 동물검역소, 실험동물사육시설 등 이와 비슷한 것)	×	×	×	×	×	◇	×	×	×	×	×	○	◇	○	●	●	×	○	●	○	×	●
		㉰도축장 ㉱도계장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×	○	◇	×	○	●	×	○	●	○	×	●
		㉲작물재배사 ㉳종묘배양시설	×	×	×	○	○	◇	×	◇	◇	×	×	○	◇	○	●	●	○	●	●	●	○	●
		㉴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	×	×	○	○	○	◇	×	◇	◇	×	×	○	◇	○	●	●	○	●	●	●	○	●
		㉵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㉮~㉴의 시설과 비슷한 것(동·식물원 제외)	×	×	×	㉧	㉧	D	×	E	E	×	×	○	◇	㉠	K	●	㉧	M	●	M	㉧	●

범례	
●: 허용, ×: 금지, ○: 도시·군계획조례에 따라 허용, ◇: 도시·군계획조례에 따라 금지	
네거티브 방식(금지행위 외 허용):준주거, 상업지역, 준공업, 계획관리	
국계법에 따라 일부금지, 그 밖의 건축물 조례에 따라 금지	조례
A 오염배출시설(특정 대기·수질 유해물질, 대기오염, 폐수, 지정폐기물, 소음·진동)인 것	
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, 도시·군계획 조례 참조	
C 시내버스차고지외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·저장소(수소연료시설 허용)	
D ㉮㉰㉱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/ E 동물과 관련된 ㉮~㉱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	
조례에 따라 일부금지, 그 밖의 건축물 국계법에 따라 금지	조례
F 출판업,인쇄업, 금은세공업,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 오염배출시설(특정 대기·수질 유해물질, 대기오염, 폐수, 지정폐기물, 소음)이 아닌것	
G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 또는 도시·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밖에 있는 대지 밖에 건축하는 것	
H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,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 또는 도시·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밖에 있는 대지 밖에 건축하는 것	
J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	
K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 연면적이 90%미만인 것. (도시·군계획조례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)	
국계법에 따라 일부허용, 그 밖에 건축물 금지	
ⓐ G에 해당하는 것 / ⓑ H에 해당하는 것	
ⓒ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3천㎡ 미만인 것	
도시·군계획조례에 따라 금지, 그 밖의 건축물 허용	조례
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㎡이상인 것	
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㎡이상인 것	
Ⓐ 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이 아닌 것	
Ⓑ 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한는 시설 외	
Ⓒ 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/ ㉠ 안마시술소	
Ⓔ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 연면적이 90%미만인 것(도시·군계획조례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) 외	
기타	
㉠ 국토교통부령 및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금지, 그 외 허용	
포지티브 방식(도·시군계획조례 일부허용):준주거, 상업지역, 준공업, 계획관리 외 용도지역	
국계법에 따라 일부허용, 그 밖의 건축물 금지	
⑩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㎡미만인 것	
Ⓐ 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	
Ⓑ 해당 일반공업지역의 공장생산품 판매시설	
Ⓒ 초등학교 / Ⓓ 현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·어업인주택	
국계법에 따라 일부허용, 그 밖의 건축물 조례에 따라 허용	조례
A 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 / B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	
C 정신병원, 요양병원 / D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	
E 초등학교 허용, 유치원, 중·고등학교 조례에 따라 허용, 그 외 금지	
F 유치원, 초등학교 허용, 중·고등학교 조례에 따라 허용, 그 외 금지	
G 마을 회관·공동작업소·공동구판장으로 1천㎡미만인 것	
H 공중화장실, 대피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	
I 독서실 / J 노래연습장	
K 동물과 관련된 ㉵~㉷ 시설과 비슷한 것이 아닌 것	
M 식물과 관련된 ㉸~㉻까지 시설과 비슷한 것	
도시·군계획조례에 따라 일부허용, 그 밖의 건축물 금지	조례
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미만인 것	
⑩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㎡미만인 것	
㉚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㎡이하인 것	
Ⓐ 1)오염배출시설[1)특정대기유해물질·2)대기오염물질(1종~4종), 3)수질유해물질(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운영시 제외), 4)폐수(1종~4종), 5)지정폐기물, 6)소음·진동(허용기준 2배이상)]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쇄업,기록매체복제업,봉제업,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, 컴퓨터관련전자제품조립업, 두부제조업, 세탁업의 공장, 지식산업센터 2)떡 및 빵 제조업으로 1천㎡미만·악취방지시설·1)~6) 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	
Ⓑ 오염배출시설[1), 2)(1종~3종), 3)~5)]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도정공장·식품공장·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, 첨단업종 공장(산집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)	
Ⓒ 1)오염배출시설[1), 2)(1종~3종), 3)~5)]